

### 조세지원

- ☑ **관련부처**  
산업통상자원부/  
중소기업청/특허청
- ☑ **지원대상**  
중소기업
- ☑ **신청시기**  
1, 2, 3, 4/4분기

## 3-1.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

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·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의 사업화자금 대출 및 펀드운용사의 투자를 지원함으로써,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지원

### ☞ 지원대상

- 벤처기업 및 이노비즈기업
- NET, NEP, 전력신기술, EE, GS, GQ, GR, 환경마크, K마크 등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
-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
-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으로서,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,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% 이상인 기업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, 최종 평가결과 ‘성공’ 판정을 받고,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
- 금융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
- 「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」상의 녹색기술·녹색사업 인증 및 녹색전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
- 해당 기술(정부인증, 특허·실용신안권,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)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

### ☞ 지원내용

- 기술평가비용의 지원(산업통상자원부)
  -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지 정부가 기술평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함

기술평가기관	기술평가비용	기술평가비용	
		신청기업 부담금	정부지원금
기술보증기금	200만원	50만원	150만원
한국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	400만원	50만원	350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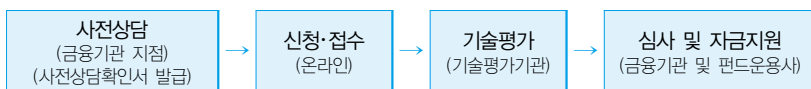
\* 신청기업은 기술평가비용 전액에 대한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여야 함

- 평가비용지원은 기업당 사업기간 내(사업공고일로부터 1년) 1회로 제한
- 동일 기술에 대한 평가비용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은 없음
- 사업화자금대출
  - 금융기관은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를 토대로 각종 신용대출(부분담보·보증 포함)을 지원
  - 금융기관별 대출상품은 기존 대출상품 및 신규 대출상품을 포함하여 운용 가능함
- 사업화자금 투자(산업통상자원부의 신성장동력펀드, 산업은행의 지식재산권 펀드 등)
  - 펀드운용사는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투자심의를 토대로 최종 투자를 지원

### ※ 유의사항

- 사업화자금 대출의 경우, 기업별 대출 여부, 규모, 조건 등은 기술평가결과와 자체 여신심사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자율 결정

### ※ 추진절차



\* (기술평가기관) 기술보증기금,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, 한국발명진흥회

\* (금융기관) 경남, 광주, 국민, 기업, 농협, 대구, 부산, 스탠다드차타드, 신한, 외환, 우리, 전북, 하나, 한국수출입은행

\* (펀드) 산업기술사업화펀드 및 지식재산권펀드

### ※ 신청절차

- 신청시기 : 2014년 3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
- 신청방법 : 기술금융 온라인 포털사이트(www.tf.or.kr)에 온라인 접수 후 관련 서류를 해당 기술평가기관에 제출

#### 문의처

www.tf.or.kr

- 신청방법, 진행절차, 평가비용지원 관련 문의
  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기반팀 (02)6009-4322
- 기술평가기관 : 평가방법, 평가절차, 평가일정 협의 등 관련 문의
  -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센터 및 기술금융 상담센터 (032)830-5720
  -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산업시장분석실 (02)3299-6054
  -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거래센터 (02)3459-2893

## 금융지원

- 관련부처  
특허청
- 지원대상  
중소기업
- 신청시기  
연중수시

# 3-2. 보증연계 특허기술평가 지원사업

기술력은 우수하나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 가치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금 보증·대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비용을 지원

## :: 지원대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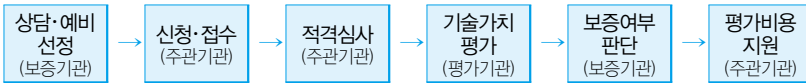
- 신청일 현재 등록된 특허권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

## :: 지원내용

-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는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특허기술가치 평가에 대하여 평가비용을 지원하고,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보증지원

\* 2014년 현재 보증기관 -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

## :: 추진절차



\* (주관기관) 한국발명진흥회 / (금융기관) 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

## :: 신청절차

- 신청시기 : 2014년 2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 접수
- 신청방법
  - 보증기관(기술보증기금, 신용보증기금)의 각 지점에서 상담 및 신청·접수

## 문의처

[www.kipa.org](http://www.kipa.org), [www.kibo.or.kr](http://www.kibo.or.kr), [www.kodit.co.kr](http://www.kodit.co.kr)

- 한국발명진흥회 사업지원팀 (02)3459-2942, 44, 36
-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(032)830-5715
-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(02)710-4584
- 특허청 산업재산진흥과

#### 금융지원

- 관련부처  
기타
- 지원대상  
중소기업
- 신청시기  
연중수시

### 3-3. R&D 보증

아이디어 단계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에 걸친 R&D금융 매칭을 통해 체계적인 R&D금융을 지원

#### ● 보증대상

- (개발단계 및 사업화준비단계) R&D평가표에서 'B등급 이상' 및 경제성 분석 결과 '경제성이 인정된 기업'
- (사업화단계)
  - 최근 5년 이내 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 지원 R&D과제 성공기업
  - 기업이 자체수행한 R&D과제 성공기업(기보의 성공판정 기준 충족시)
  - 최근 5년 이내 이전된 기술을 활용하여 R&D를 추진하는 기업

#### ● 보증내용

- 보증내용
  - (개발단계) 기술개발(R&D) 중에 있는 신청기술의 개발자금
  - (사업화준비단계) 개발완료 후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자금
  - (사업화단계) 개발완료 과제의 사업화 및 제품양산에 필요한 운전 및 시설자금
- 우대내용
  - 부분보증 비율 우대
    - 개발단계, 사업화준비단계 : 95% ~ 100% 부분보증
    - 사업화 단계 : 85% ~ 95% 부분보증(협약은행의 경우)
  - 보증료 : 0.3%p 감면
  - 은행과의 협약에 의해 취급하는 사업화자금의 경우 금리 및 대출취급조건 우대
    - 협약은행 : 기업, 국민, 우리은행, 농협중앙회
    - 금리우대 : 영업점장 전결로 최대 1.5%p ~ 1.8%p 감면 가능
- 유의사항
  - 기술평가료
    - 개발단계, 사업화준비단계 : 800,000원

- 사업화단계 : 200,000원
- 보증료 : 0.5% ~ 3.0%(기술사업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)

### ∴ 신청절차

- 신청시기 : 연중수시
- 신청방법 :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([www.kibo.or.kr](http://www.kibo.or.kr)) 또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접수하고 필요서류 제출



[www.kibo.or.kr](http://www.kibo.or.kr)

• 기술보증기금 각 영업점 1544-1120